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- 466호

「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」 제정 고시

「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」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,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명단 공표 처리 절차

제3조(공표 대상 예정자 추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24조 및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·운영하는 (재)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(기본사항, 시정명령·영업정지·과징금 등 행정처분) 등을 제출 받아 조사대상 건설사업자를 추출한다.

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출된 명단을 기초로 당해 행정처분권자 또는 발주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실조회 등을 거쳐 체불발생일, 체불액, 체불 횟수 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예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작성한다.

1. 체불발생일, 체불액, 체불횟수 등

2. 영 제82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항

3.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여부

4. 그 밖에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 여부

③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선별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 명단을 사전 심의한다.

제4조(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) ① 장관은 법 제86조

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 건설업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
2.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건설사업자가 체불액 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3.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·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

4.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신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
 5. 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
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
-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와 대금 청산 여부 등을 종합 심의·의결하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.
- ④ 장관은 최종 심의·의결 결과를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명단 공표 시기 및 방법 등) ①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명단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과 내용은 영 제82조의4를 따른다.

제6조(사후관리) ① 장관은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.

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명단에서 즉시 해당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

있다. 이 경우 장관은 삭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.

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

제3장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

제7조(동일한 위반행위)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2회 이상의 처분 횟수를 1회로 보도록 한 ‘동일한 위반행위’란 동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체불행위를 말한다.

제8조(명단 공표 제외대상) 심의위원회는 영 제82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소명을 제기하는 경우, 장관은 영 제82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(명단 공표 후에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).

1. 체불액의 2/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
2.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모든 건설업

종이 등록말소된 경우

3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4.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

제4장 심의위원회 운영

- 제9조(심의위원회 운영 등)**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영 제82조의5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0조(위원의 해촉)** 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2.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
3.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4. 그 밖에 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에 따라 귀하(귀사)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상습체불 건설사업자 인적사항	성명 및 상호 (법인인 경우 법인 명 칭 및 대표자 성명)		나 이 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 이)	만 세
	주소 (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 소)			
공표 내용		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		
공표 예정일		년 월 일		
공표 방법		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		
소명 기한		년 월 일		

만약 귀하(귀사)께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
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뒷면 참조)
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
우 같은 법 제8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위 예고내용이 공표됩니다. 끝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직인

※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(전화: 044-201-3578)
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관련 조문

- **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(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(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,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)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 대금,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(이하 "상습체불건설사업자"라 한다)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-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)**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"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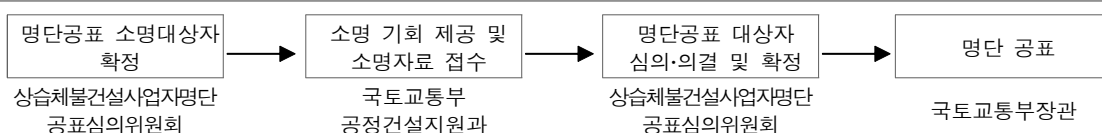
1.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(이하 "상습체불건설사업자"라 한다)가 사망한 경우
2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「민법」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3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
4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)**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-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·나이·상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나이·주소 및 법인의 명칭·주소를 말한다)
2.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

처리절차



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

본인(법인)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,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일 :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1. 대상자 인적사항

대표이사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)			
건설업체	상호		법인번호 (사업자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)			

2. 소명사유 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2조의3 해당 여부)

구 분	해당여부 (O,X)	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
① 채불건설사업자의 사망·실종신고 (영 제1호, 제2호)		-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 채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액을 전액 지급(영 제3호)		- 체불 및 청산내역(3항 참조) - 체불 청산 증빙자료(입금증, 통장사본, 상대방 확인서(인감 증명서 포함), 배당표,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)
③ 채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,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(영 제4호)		- 체불 및 청산내역(3항 참조) -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(붙임1 참조) - 자금조달 방안(붙임2 참조) -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(입금증, 통장사본, 상대방 확인서(인감 증명서 포함), 배당표,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)
④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(영 제5호)		-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선고문

3.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(2-② 전액 청산,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

연번	체 불 상대자	체 불 액	청 산 액	잔 액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

4. 청산계획서(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 : <붙임 1> 참조

5. 자금조달 방안(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 : <붙임 2> 참조

6. 제출 증빙(붙임) 자료 목록

연번	증빙자료 제목	비 고
1		
2		
3		
4		
5		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

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하

<붙임1> ※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

청산 계획서(예시)

수신인

기관명 : 국토교통부장관

제출인

이름 :

주소 :

본인(법인)은 기준일 현재 총 ()회의 체불액 ()원 중 ()회에 대하여 ()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()원을 미지급하였으며,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니다.

☐ 지급계획

- 김○○ : 0000. 00. 00.까지 전액 지급

- 박○○ : 0000. 00. 00.까지 전액 지급

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,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,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제출일 : . . .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<붙임2> ※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

자금 조달 방안

제출인	성명 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
자기 자금 (단위: 원)	① 금융기관 예금액		② 부동산매도액	
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	④ 현금 등 기타	
	⑤ 소계			
차입금 등 (단위: 원)	⑥ 금융기관 대출액		⑦ 사채	
	⑧ 기타		⑨ 소계	
⑩ 합계(원)				
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인 : (서명 또는 인)				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							
공 표 대 상 자	인 적 사 항	성 명 (법인대표)		상 호 (법인명)		나 이 (법인인 경우 대표자 나이)	
		대표자 주소					
		법인 주소					
소 명 검 토	소명일자		소명내용				
	검토 및 확인내용						
공 표 여 부	공표 여부		공표 제외 시 그 사유				
	공 표	공표 제외	(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및 결과)				
사 후 관 리	명단 공표 후 소명자료 제출일자		처리결과				
			공표 () / 공표 제외 ()				
	공표 제외 사유						